

2021년 하반기

학사예비장교 후보생 소집교육



국군본부



□ 소집교육

- 매 학기 1회 2시간 범위 내 실시(전반기 : 3~4월 / 후반기 : 9~10월)
 - * 미 참석 시 학군단에 사전연락 / 무단 불참 시 : 1회 경고, 2회 해임심의

□ 후보생 신분 포기

- 학사 예비 장교 후보생은 학군단에 보고 후 포기서약서 제출
 - * 학군사관 선발, 3사관학교 입교, 법규위반, 성적불량, 자진포기 등

□ 휴학 및 복학

- 휴학은 아래와 같이 해외유학 및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청 가능
- 1년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을 연기 가능

- 질병 진료 / 치료를 위한 휴학
- 본인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가사 사정으로 인한 경우
- 유학 또는 외국대학에서 연수를 위한 경우(1년 후 복학을 전제로 함)
- 교환학생의 경우 국내 복귀 후 모집과정별 입교 예정자

- * 특별한 사정의 경우 인사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을 초과하여 휴학 가능(심의 실시)
- 복학시 복학증명서(재직증명서)를 발급받아 관리학군단에 제출



□ 해임심의

- 대상 : 법규 위반자, 인성 부족자, 성적 불량자, 사회적 물의자
- 해임기준

구분	판단기준
법규 위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학 또는 제적되거나 사전 허가 없이 휴학한 자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
인성 부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해 행위자, 자살 시도자, 마약류 휴대 및 복용자 • 정신병 진단으로 입원 및 치료자 •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자 및 성희롱 행위로 징계받은 자 •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자(파렴치, 사기 등) • 부도덕한 이성 교제자(계간, 간통, 혼인빙자 간음 등)
성적 불량자 / 체력 저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기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• 성적 평균이 C학점 미만인 학기가 2회 이상인 자(1회 경고) • 체력 검정 시 최종 불참하거나 불합격한 자



□ 해임심의

- 대상 : 법규 위반자, 인성 부족자, 성적 불량자, 사회적 물의자
- 해임기준

구분	판단기준
사회적 물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주 운전자, 절도 및 도박 행위자 • 이적 단체 및 불건전한 단체 가입 및 활동 참가자 • 신용 불량자, 금융사기 행위자 및 가담자 •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모의하거나 선동하는 자 • 인터넷 등 공공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부대나 개인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자

○ 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



* 대상자 미 참석시 서류심의로 해임 가능



□ 학년별 강조사항

○ 1~3학년

- 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예정(4학년) *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
- ② 연 2회(학기별) 소집교육(2시간) 참석
- ③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학군단에 연락
* 연락처, 주소 변경, 편입, 휴학, 각종 범죄로 인한 기소 등
- ④ 의무사항 발생 시 반드시 확인 후 시행 * 육군모집 홈페이지(학사예비 관리)
- ⑤ 학기별 성적 C학점 이상 취득 * 1회 미달시 경고, 2회 미달 시 제적심의 대상

○ 4학년(졸업예정자)

- ① 2021년 하반기 체력검정은 미시행
- ② 장려금 지급(11월 한)
- ③ 졸업 전 신체검사(학군단 통제) * 신체등급 4급 이하 / 불합격시 입교 불가
- ④ 신원조사 실시(12월말)
- ⑤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(입교 전) * 학위 미 취득시 유급 / 해임 심의 대상
- ⑥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: 2022년 3월 초(충북 괴산군) * 임관일 : 7. 1.부



□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의무

- 휴학 또는 복학시 관리학군단 연락 및 휴·복학 증명서 제출
- 관리학군단에서 지정한 일정에 소집교육 참석
- 4학년(졸업예정자)은 입교 전 학군단 통제하 신체검사 실시
 - * 신체검사 불합격시 장교 양성과정에 입교 불가
- 개인신상 변동(전화번호, 주소 등)시 관리학군단 연락
 - *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책임
- 기타 육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행(통장사본 제출, 포기각서 제출 등)

□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교부 시 제출

- 징병검사 통보 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, 졸업 시 까지 현역병 입영연기 조치를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함.
만약, 양성과정 입교일 이전에 현역병 입영일자를 통보 받으면, 현역병 입영이 우선되니, 반드시 서전에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함.
 - * 현역병 입영일자가 장교양성과정 입교일보다 늦으면 장교 양성과정에 입교와 동시에 현역병 입영사유가 해소 됨.



□ 자주하는 질문

○ 졸업예정자(4학년) 입교일은 언제인가요?

☞ 내년도 2월말~3월초 예정입니다.(육군학생군사학교 별도 통제)

○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입니다. 올해 졸업을 못해 입교가 불가능합니다.

☞ 졸업 불가시 인사사령부에서 심의를 통해 유예 여부 판단하여 적용

○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시기 및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?

☞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학년때 지급

○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으로 합격했는데 병무청에서 신검 및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.

☞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입대 연기는 해당 병무청에 본인이 직접 연기 신청

○ 학사예비장교 후보생도 휴학 가능한가요?

☞ 가능, 단, 질병의 진료, 치료를 위한 경우 / 가사사정으로 인한 경우, 유학 또는 외국대학에서 연수를 위한 경우, 학군단 심의 후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심의 후 결과 통보